철원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인원)	임용직급	근무 기간	담당업무
기획감사실	정책협력관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년	• 중앙정부·국회·강원도 정책 협력 총괄 및 네트워크 구축 • 정부 정책동향 분석, 정책 연구 및 의안 자료 파악 등 •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국가 정책사업 등 발굴 •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 건의 및 대외협력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군정홍보 (영상·사진)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년	• 각종 행사 및 군정 기록보존용 동영상(사진) 촬영 • 군정 관련 영상(사진) 제작 및 편집 • 현안 및 핵심사업 SNS 홍보영상(사진) 제작 • 각종 행사 및 홍보 채널의 운영지원 및 홍보업무 협의 시 전문적 자문 • 영상(사진) 촬영 장비 세팅 및 차량 적재, 하역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안전총괄과	교통지도 단속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단속CCTV 판독 및 과태료 부과·통지 • 주정차단속 민원응대(전화, 대면 등) • 교통지도 차량 운행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인재육성과	사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 행사 기획·운영 • 도서관 시설관리 및 자료실 운영 및 장서관리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 치매등록 및 상담, 조기검진 • 치매예상 및 인식개선 홍보 •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근무부서	임용분야 (인원)	임용직급	근무 기간	담당업무
보건소 (예방 접종실)	간호사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예방접종 접수, 민원상담, 접종, 전산등록 등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비용지원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보건소 (정신건강 복지센터)	간호사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사업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농업유통과	농기계수리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농업기계임대사업 수리 및 관리 ⋆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상하수도사 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운영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관리·운영 현장 업무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 당직근무 가능한 자(주말·야간 등)
	정수시설 운영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년	⋆ 정수시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관리 ⋆ 정수장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수질분석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년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 수질검사 기록관리 및 실험실 운영 및 오·폐수 채수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시설관리 사업소	안전관리자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년	⋆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 모노레일 차량 및 궤도 유지관리 및 정비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대체인력	행정사무 **(6명)**	한시임기제 **8호**	1년	⋆ 일반행정, 사회복지 분야 등 ⋆ 휴직자(결원) 업무 수행 ⋆ 그 밖에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수행 ※ 본청·사업소, 읍·면 등 철원군 내 부서중 결원 발생 부서

※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단, 한시임기제의 경우 1년 6월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접수 인원이 임용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거주지 및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임기제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 관련 분야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퇴직 후 10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나.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필수)공통자격: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정책협력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정당, 공공기관, 기타 법인 등에서 정책 결정, 정책 지원, 중앙부처 네트워크 관리, 대외협력, 행정지원 근무 경력 또는 보좌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거나, 대외 협력 · 정책 관련 조직(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력
군정홍보 **(영상·사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요건: 사진, 영상 촬영 둘다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기관, 법인, 기업 등에서 **영상·사진 촬영(필수)**을 **활용(편집,홍보)** 분야 근무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필수요건: 한글, 엑셀 등 전산작업 가능한 자** **[필수요건]**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자 ※ 우대요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IT플러스 등 전산자격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교통 단속, 교통행정 또는 일반 민원(행정지원) 관련 업무 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도서관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간호사 **(예방접종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1.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table>
<tr><th>임용분야</th><th>자 격 기 준</th></tr>
<tr><td>농기계수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td><td>❍ 지게차운전기능사(필수)를 갖추고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다음 자격증 소지자(하나이상 소지)
- 농기계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농기계정비 실무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td></tr>
<tr><td>상하수도
사업소
시설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td><td>❍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다음 자격증 소지자
<table><tr><td>기 술 사</td><td>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상하수도, 수질관리</td></tr><tr><td>기 능 장</td><td>건설기계정비, 용접, 전기</td></tr><tr><td>기 사</td><td>일반기계, 건설기계정비, 용접, 소방설비(기계분야), 전기, 수질환경,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td></tr><tr><td>산업기사</td><td>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소방설비(기계분야), 수질환경,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td></tr><tr><td>기 능 사</td><td>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전기, 환경, 설비보전, 조경</td></tr></table>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전·유지관리 업무
- 건축물, 공장, 플랜트, 사업소 등의 기계·전기·소방·환경·배관설비 분야 운전·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업무
- 상·하수도 관로, 펌프장 또는 관련 토목·배관 시설물 시공·보수·유지관리 업무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td></tr>
<tr><td>정수시설
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td><td>❍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td></tr>
</table>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수질분석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자격증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환경기능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 등에서 하수(수질)처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야간근무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모노레일 안전관리 책임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번 자격증 소자자의 경우 경력기준 필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궤도사업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
한시임기제 제8호 [주 35시간]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사기업 포함) 등에서 일반행정 업무 수행 실무경력

※ 관련 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상위 임용 직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직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세부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정지 또는(정지예정자 포함)
2)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3)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4) **경력 계산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예시)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경력 1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2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응시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간 선택제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계약기간: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8호)의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주 5일 주 35시간

※ 주말근무·야간근무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당직근무(야간·주말) 할 수 있음.

○ 보수조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함

- 일반(시간)임기제

(단위 : 천원)

직급	주40시간		주35시간		비고
	상한액	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6급(나급)	86,606	57,708	75,780	50,494	
7급(다급)	70,782	50,272	61,934	43,988	
8급(라급)	62,096	44,296	54,334	38,759	
9급(마급)	57,678	34,606	50,468	30,280	상한액의 60%

- 한시임기제(8호): 월2,081,010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9급 및 마급의 경우 상한액의 60% 적용)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 지식, 성실도 등을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후,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철원군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 시험일정(안)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6.(화) ~ 2026. 10. 13.(화)	2026. 10. 16.(금)	2026. 10월 중	2026. 11월 중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접수시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 수 처: 철원군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 10. 13.(화)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수입증지금액 : 나급(7천원), 라·마급(5천원), 한시임기제8호(5천원)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니다.(☎033-450-5232)**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8.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하시고,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시행처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중 '붙임1~붙임6'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 **스템플러 사용 및 제본철 등 불가(개별 낱장으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 철원군 수입증지 (1층 민원허가과 판매)

※ 나급(7천원), 라·마급(5천원), 한시임기제8호(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 제3,4호서식>

※ 성명, 나이,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⑥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⑦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별지 제7호서식>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관련자료는 '⑦경력(재직)증명서' 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또는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모두 제출

⑩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자격증, 상훈, 실적 등)(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근 2년이내 것만 인정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철원군 자치행정과(☎033-450-5232)

채용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 고
정책협력관	기획감사실	033-450-5211	
군정홍보(영상·사진)	기획감사실	033-450-5556	
교통단속	도시정책과	033-450-5366	
사서	인재육성과	033-450-5297	
농기계수리	농업유통과	033-450-5224	
사업소현장근무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226	
정수시설운영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22	
수질분석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82	
모노레일안전관리	시설관리사업소	033-450-5044	
대체인력	자치행정과	033-450-5232	